

## 재야 일부 주장에 대한 반론

98. 12. 법무부

「민변」은 12.3 법무부가 실업자노조원문제, 인권위의 정부기구화, 특별검사제를 반대하고 준범서약서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무부와 법무부장관을 반개혁적이라고 매도하였다. 그리고, 「국민승리21」은 이 문제로 법무장관 아파트 앞에서 시위까지 획책하고 있다. 이 주장이 과연 옳은지 본다.

### I. 실업자 노조 가입문제

- 법무부는 공안사이드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교조 특별입법을 지지하였다. : *사과 다음 애초에 반대.*
- 그러나, '해고자'와 '자발적 이직자'가 초기업단위 노조 (즉, 지역별, 산업별 단위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역별, 산업별 초기업노조의 대량 설립과 이러한 노조에 해고자가 가입하여 주도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미 노동운동권에서는 산별노조 중심체제로의 전환과 해고자 가입에 의한 주도권 장악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음)

□ 이러한 법개정은

① 「기업별 단위노조」를 중심으로 노사협상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우리 노동법 체계에 배치되고

② 모처럼 정착되어가는 노사안정을 파괴할 것이다

즉, 「산업별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 독일 등과는 달리 기업별노조중심으로 되어있는 우리체제에서 해고자등이 주도하는 지역별, 산업별 노조를 법률로 공인하게 되면, 결국 개별기업의 사업장 중심 현행 노사협상 체제는 붕괴되어 노사간의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것이다.(독일식 산별노조체제로의 전환은 ▲개별기업의 사정과 관계없이 획일적 협상타결을 해야 하므로 협상타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그 결과 또한 능력주의 원칙과 배분적 정의에 위배될 뿐더러 ▲해고자가 주도권을 장악하여 노사협상이 정치투쟁으로 변모할 가능성 있음)

※ 일부기업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해고자들이 다시 상급노조원으로 복귀하여 협상테이블에 마주앉게 될 것이라며 「경총」에 항의하고 있음

## II. 인권법 문제

- 최근 운영과 예산의 독립등 당초 법무부안이 대폭 수정되었다.
-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하면 ▲집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가 어렵고, ▲정부내 다른 기관과의 기능 중복으로 갈등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며 ▲장관급 1명, 차관급 9명등 고위직을 포함, 500명 이상의 국가 공무원 증원을 필요로 하는데 공무원 감축을 추진하는 현 상황에서 불합리한 공무원 증원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 영국, 뉴질랜드, 호주, 남아공 등도 모두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기구로 했던 인도네시아는 실패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 수사기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권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장관에 대하여 타당성도 없는 국가기구론을 내세워 반개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 III. 특별검사제

- 5공비리, 5.18 사건등 당시의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건 수사를 위해 과거 특검제를 주장하였으나,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건이 없다

- 한나라당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특검제 안중
  - 국회가 특별검사를 선임하는 안은 국회 다수파 정당이 특별검사를 선임하게 되어, 실제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고
  - 대통령 직속의 상설기구로 하자는 안은 야당이 그 중립성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실적위주의 정치사건 수사로 정치적 불안을 야기시킬 것이다.
- 최근 특검제의 본국인 미국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 IV. 준법서약서

- 법무부장관은 60여년 지속된 「사상전향제」가 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 이를 폐지하였다.
- 그리고, 새정부 들어 2차례의 사면을 통해 1,500여명의 공안사범을 석방, 감형, 복권하였다.
- 「준법서약제」는 형기이전에 출소의 은전을 베풀면서 출소후 외부적 행동이 국법질서를 존중할 것인지를 묻는 절차에 불과하다.

- 이러한 절차는 법집행과 법질서확립의 책임을 맡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당연한 의무인데 사상범을 무조건 전원 석방하지 않는다고 반개혁적이라고 하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

## V. 맺는 말

- 법무부는 「질서와 인권이 함께 숨쉬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기치아래, 법과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그동안 각종 현안에 대해 법무부가 이룩한 일은 무시하여 버리고, 법무부가 반대하는 일은 그 구체적 이유를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자신들의 주장에 어긋난다고 하여 무조건 반개혁적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과연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자세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 법무부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개혁은, 무조건 목소리 큰쪽에 끌려 다니는 개혁이 아니다. 개혁이 지향하는 목표와 조용한 다수국민의 의견에 충실하면서 사회안정을 깨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적 개혁의 길이라고 믿는다.☐